

[별표 7]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(제22조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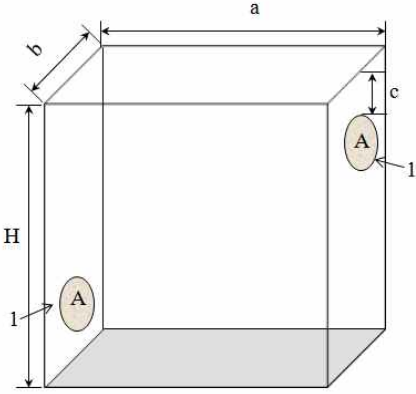
1. 소화시험설비

- 가. 시험모형은 별표 3의 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나. 시험모형에는 산소공급원 용도로 동일한 2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설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하며, 2개 개구부 면적의 합을 누설면적으로 한다.
- 다. 별표 2의 제2호에 설명된 원형(캔) 소화모형을 사용하여, 개구부가 설치된 2개의 측벽으로부터 500 mm 이내에 3개의 원형(캔) 소화모형을 시험실 높이(H)의 0.1H, 0.5H, 0.9H 지점에 각각 2세트 위치시킨다.
- 라. 원형(캔) 소화모형에는 각각 원거리 재점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재점화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센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마. 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는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며, 어떠한 경우라도 천장으로부터 방출구의 이격거리가 30 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. 방출구는 화원에 직접 방사되지 아니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방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2.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방법

- 가. 시험은 B급 설계밀도를 적용한다.
- 나. 소화모형의 n-헵탄에 점화하여 30초 동안 예비연소를 한 후 개구부를 닫고 즉시 수동으로 방출시키며 방출이 끝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.
- 다.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모든 원형(캔) 소화모형에 원거리 재점화 장치를 5초 간격으로 작동하여, 처음으로 소화모형이 재점화 되는 시간을 측정한다. 이 경우 소화밀도 유지시간은 방출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모든 원형(캔) 소화모형이 재점화 되지 않는 시간까지로 한다.

라. 이 시험을 3번 반복하여 가장 짧은 시간을 해당 누설면적의 최대 소화밀도 유지시간으로 하며, 최대 소화밀도 유지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더 작은 누설면적에서 동일한 시험을 반복한다.

시험실의 구성도	비고
	1 : 개구부 a : 시험실의 장변(mm) b : 시험실의 단변(mm) c : 이격거리(mm, 50 mm이내) H : 시험실의 높이(mm) A : 개구부의 면적(mm²) V : 시험실의 체적(mm³)

[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모형도]